#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8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최은석・성일종・박충권

서일준 • 고동진 • 정동만

서지영 · 김승수 · 유용위

이성권 · 김재섭 · 임이자

의원(12인)

##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은행 지점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농어촌지역에 영업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핀테크 업체의 등장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은행 업무의 통합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하여 저비용으로 은행의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일본은 2002년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약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중이고, 호주의경우에도 1995년 도입하여 호주 전역의 80개 이상의 은행이 3,500개우체국과 제휴하여 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

용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은행업 및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3조의5).
- 나. 금융기관이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신고를 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43조의6).
- 다. 은행대리업의 범위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로 하되 은행을 위하여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무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
- 라.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 43조의10).
- 마.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은행은 그 서류의 열람 등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11 및 제43조의13).
- 바.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12).

- 사. 은행대리업자에게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
- 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16).
- 자.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안 제66조 및 제69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을 위하여 은행의 업무를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은행대리업자"라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6장의2(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의2 은행대리업

- 제43조의5(은행대리업의 인가) 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일 것
  - 2. 은행대리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은행대리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은행대리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 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의6(금융기관의 은행대리업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은행

-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43조의7(최저자본금) 은행대리업자는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대리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3조의8(업무범위 등) ①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 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무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운영할수 없다.
  - ③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허락을 받아 은행대리업을 재위탁할 수 있다.
- 제43조의9(대리·중개업무의 표시)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을 위하여 업무를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3조의10(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대리 또는 은행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대리업무 또는 은행중개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제43조의11(서류의 작성·보존 의무) ①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대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 존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은행대리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12(이용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은행대리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의13(업무 지도·감독) ① 은행은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 자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은행대리업자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한 업무의지도 및 그 밖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3조의14(경영공시)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43조의15(준용규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제3항은 은행대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은행대리업자"로, "은

행업"은 "은행대리업"으로 본다.

제43조의16(손해배상책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은행대리업자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2항 중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 2.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행의 임원"을 "은행(은행대리업자를 포함한다)의 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3조의7을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제1항제7호의5를 제7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5부터 제7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의5. 제43조의10을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7의6. 제43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 7의7. 제43조의14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대리업자
- 7의8. 제43조의15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대리 업자
- 3. 제43조의15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
- 2. 제43조의9를 위반하여 대리·중개업무를 표시하지 아니한 은행대 리업자
- 3. 제43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게을리 한 은행대리업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의2.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을
	위하여 은행의 업무를 대리ㆍ
	중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
	<u>는 것을 말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은행대리업자"란 은행대
	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
	<u>다.</u>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6장의2 은행대리업
<u>&lt;신 설&gt;</u>	제43조의5(은행대리업의 인가) 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u>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1.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일 것</u>
	2. 은행대리업 경영에 드는 자
	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u>것</u>
- 4. 은행대리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은행대리 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대리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의6(금융기관의 은행대리

<신 설>

업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제43 조의5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

#### 1. 은행

-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 행중앙회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 고
- 7.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제43조의7(최저자본금) 은행대리 업자는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 를 받아 은행대리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8(업무범위 등) ① 은행 대리업자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 무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 무를 운영할 수 없다.
- ③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허락을 받아 은행대리업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의9(대리·중개업무의 표시)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을 위하여 업무를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10(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대리 또는 은행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대리 업무 또는 은행중개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 <신 설>

<신 설>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의11(서류의 작성·보존의무) ① 은행대리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은행대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 하거나 은행대리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12(이용자재산과 고유재 산의 구분) ①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은행대리업자는 자신이 보 관·관리하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 용자의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설>

제43조의13(업무 지도·감독) ① 은행은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 나 예금자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은행대리업자는 업무를 위 탁한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그 밖의 건전 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의14(경영공시) 은행대리업
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하여야 한다.

제43조의15(준용규정) 제34조제1 항,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제3 항은 은행대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은행대리업 자"로, "은행업"은 "은행대리 업"으로 본다.

제43조의16(손해배상책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은행대리업자로 제66조(벌칙) ① (생 략)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68조(벌칙) ① <u>은행의 임원</u>,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자를 3	工
함한다)가 은행대리업을 영역	<u> </u>
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	<u> 케</u>
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민	<u></u> ት,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	<u>기</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ની</u>
<u>해당하는</u>	-
	_
1.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기	<u>\</u>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u>=</u>
<u>자</u>	
2. 제43조의5에 따른 인가를 변	탈
지 아니하고 은행대리업을 7	<u>설</u>
영하는 자	
제68조(벌칙) ① <u>은행(은행대리역</u>	크
자를 포함한다)의 임원	_
	_
	_
	_
	_
	_
	_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8.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 7의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의5. (생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3조의7을 위반하여 최
   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6. ~ 8.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_\_\_\_\_

-----

- 1. ~ 7의4. (현행과 같음)
- 7의5. 제43조의10을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 7의6. 제43조의12제1항을 위반 하여 이용자의 재산을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 한 은행대리업자
- 7의7. 제43조의14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대리업자
- 7의8. 제43조의15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 <u>행대리업자</u>

7의9. (현행 제7호의5와 같음)

- 8. ~ 11.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 ③ (생략)
-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 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⑥ (생 략)

- 8. ~ 11. (현행과 같음)
- \_\_\_\_\_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43조의15에서 준용하는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은행대리업자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 니한 은행
- 2. 제43조의9를 위반하여 대리·중개업무를 표시하지 아니한 은행대리업자
- 3. 제43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게을리 한 은
   행대리업자
- ⑤ ⑥ (현행과 같음)